

계룡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치 일부개정조치안

의안번호	제 191 호
의결년월일	2005. 3. . (제 14 회)

제출일자	2005. 3.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4. 12. 28. 환경부 폐기물정책과-4686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사항 조정 포상금액과 포상금 지급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고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일부사항 조정(안 제12조).
-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안 제7조 별표1).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3.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기간 : 2005. 1. 20. ~ 2. 10 (20일간)

4. 소요예산 : 2,100천원 (2005년 예산확보, 신고포상금)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계룡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내용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내용중 “같은날(09:00~24:00)”를 “같은날(00:00~24:00)”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내용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의 “같은날(09:00~24:00)”를 “같은날(00:00~24:00)”로 한다.

제12조 내용중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삭제하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의 내용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하고, 제4항의 “조사한다”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의 내용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문화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한다”로 한다.

제15조 제목 “(포상금 지급의 제외)”를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로 한다.

제17조 내용중 “지방자치단체에서”를 삭제한다.

제18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 1)은 2005. 1. 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9조, 제15조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100	200	200	
(2)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때	200	300	300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00	300	300	
(2)기준보다 2회 이상 더 포장한 때	200	300	300	
다. 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마. 합성수지제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바. 가전제바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자.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200	300	300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라. 영 제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1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관 련 법 령(발 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 (과태료 처분 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u>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u>를 첨부하여 한다.	제4조 (과태료 처분 통지) ----- ----- ----- ----- ----- ----- - <u>별지 제12호 서식</u>----- -----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로 부과한다. ② 같은 날(09:00~24:00)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u><삭 제></u> ① 같은 날(00:00~24:00)----- ----- ②----- ----- -----
제9조 (신고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생략) 2. <u>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210mm×297mm)또는 1,000cm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u> 3.(생략)	제9조 (신고포상금의 범위)----- ----- ----- ----- 1. (현행과 같음)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10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 자 하는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u>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u> ②같은 날(09: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0조 (신고자) ① ----- ----- -----<u>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u> ----- ②같은 날(00:00~24:00) ----- ----- ----- -----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u>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u>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 ----- -----<u>경우에는</u> ----- ----- ----- -----
제13조 (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③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u>별지 제12호 서식</u>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u>조사한다.</u>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u>별지 제11호 서식</u>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제13조 (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 ----- ----- -----<u>별지 제11호 서식</u> ----- ----- ----- ④ ----- ----- ----- ----- -----<u>조사하게 하여야 한다.</u> ⑤ ----- ----- ----- -----<u>별지 제10호 서식</u> ----- -----

현행	개정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또 는 문화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한다.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 성하여 부담한다.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 <삭제>-----
제18조 (운용규정)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 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운용규정) ----- -----「국 고금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																																																																																																																																																				
(별표1)	(별표1)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단위:만원)	(단위:만원)																																																																																																																																																				
<table><tr><th colspan="4">과태료</th><th rowspan="2">포상 금액</th></tr><tr><th>부과대상</th><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 (이후)</th></tr><tr><td>1.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9조,제15조2항)</td><td></td><td></td><td></td><td></td></tr><tr><td>가. 포장공간비를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td><td></td><td></td><td></td><td></td></tr><tr><td>(1)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td><td>200</td><td>300</td><td>300</td><td></td></tr><tr><td>(2) 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td><td></td><td></td><td></td><td></td></tr><tr><td>(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2) 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다. 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마.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 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r><td>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td><td>300</td><td>300</td><td>300</td><td></td></tr></table>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9조,제15조2항)					가. 포장공간비를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200	300	300		(2) 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때	300	300	300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300	300	300		(2) 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	300	300	300		다. 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마.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 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table><tr><th colspan="4">과태료</th><th rowspan="2">포상 금액</th></tr><tr><th>부과대상</th><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 (이후)</th></tr><tr><td>1. -----</td><td></td><td></td><td></td><td></td></tr><tr><td>가. -----</td><td></td><td></td><td></td><td></td></tr><tr><td>(1) -----</td><td>100</td><td>200</td><td>200</td><td></td></tr><tr><td>(2) -----</td><td>200</td><td>---</td><td>---</td><td></td></tr><tr><td>나. -----</td><td></td><td></td><td></td><td></td></tr><tr><td>(1) -----</td><td>200</td><td>---</td><td>---</td><td></td></tr><tr><td>(2) -----</td><td>200</td><td>---</td><td>---</td><td></td></tr><tr><td>다. -----</td><td>200</td><td>---</td><td>---</td><td></td></tr><tr><td>라. -----</td><td>200</td><td>---</td><td>---</td><td></td></tr><tr><td>마. -----</td><td>200</td><td>---</td><td>---</td><td></td></tr><tr><td>바. -----</td><td>200</td><td>---</td><td>---</td><td></td></tr><tr><td>사. -----</td><td>200</td><td>---</td><td>---</td><td></td></tr><tr><td>사. -----</td><td>200</td><td>---</td><td>---</td><td></td></tr></table>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					가. -----					(1) -----	100	200	200		(2) -----	200	---	---		나. -----					(1) -----	200	---	---		(2) -----	200	---	---		다. -----	200	---	---		라. -----	200	---	---		마. -----	200	---	---		바. -----	200	---	---		사. -----	200	---	---		사. -----	200	---	---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제9조,제15조2항)																																																																																																																																																					
가. 포장공간비를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200	300	300																																																																																																																																																		
(2) 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때	300	300	300																																																																																																																																																		
나.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300	300	300																																																																																																																																																		
(2) 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	300	300	300																																																																																																																																																		
다. 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마.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 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																																																																																																																																																					
가. -----																																																																																																																																																					
(1) -----	100	200	200																																																																																																																																																		
(2) -----	200	---	---																																																																																																																																																		
나. -----																																																																																																																																																					
(1) -----	200	---	---																																																																																																																																																		
(2) -----	200	---	---																																																																																																																																																		
다. -----	200	---	---																																																																																																																																																		
라. -----	200	---	---																																																																																																																																																		
마. -----	200	---	---																																																																																																																																																		
바. -----	200	---	---																																																																																																																																																		
사. -----	200	---	---																																																																																																																																																		
사. -----	200	---	---																																																																																																																																																		

현행					개정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자.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자. ----- ----- ----- -----	200	---	---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2. ----- ----- -----	200	---	---	
3.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3. ----- ----- -----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 ----- ----- ----- -----				
(1).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1). ----- ----- -----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 ----- -----	30	50	100	5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3). ----- ----- -----	10	30	50	3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 ----- -----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나. ----- ----- -----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1). ----- ----- -----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 ----- -----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3). ----- -----	10	30	50	3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다. ----- ----- ----- ----- -----	100	200	---	15

현행					개정				
과목료					과목료				
부과대상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이 후)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이 후)	포상 금액
라. 영 제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 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 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라. ----- ----- ----- -----	100	200	---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 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 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 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 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 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 물을 제작·배포한 때					마. ----- ----- ----- ----- ----- ----- ----- -----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1). ----- -----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 ----- -----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3). ----- ----- -----	5	10	30	2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한한다)	10	30	50	3	(4). ----- ----- ----- -----	3	5	10	1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사용한 때					바. ----- ----- -----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1). ----- -----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2). ----- ----- -----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 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3). ----- ----- -----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 ----- -----	5	10	30	2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 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 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 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 물을 제작·배포한 때					사. ----- ----- ----- ----- ----- ----- ----- -----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인 사업자	100	200	300	20	(1). ----- -----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사업자	50	100	200	10	(2). ----- -----	30	50	100	5

현행					개정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포상 금액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3). ----- -----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 -----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아. ----- ----- -----	50	100	200	10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